

[별표 6]

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(제9조관련)

구 분	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		
	2007.12.31까지	2008. 1. 1부터 2012.12.31까지	2013. 1. 1 이후
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(BOD)(mg/L)	30(30) 이하	20(30) 이하	10(10) 이하
화학적산소요구량 (COD)(mg/L)	40(40) 이하	40(40) 이하	40(40) 이하
부유물질량 (SS)(mg/L)	30(30) 이하	20(30) 이하	10(10) 이하
총 질 소 (T-N)(mg/L)	60(60) 이하	40(60) 이하	20(20) 이하
총 인 (T-P)(mg/L)	8(8) 이하	4(8) 이하	2(2) 이하
총 대 장 균 균 (총대장균수/mL)	—	3,000 이하	3,000(3,000) 이하

- 비고 : 1.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 9 제2호 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2.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()는 농공단지의 경우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.